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사 임용 시행세칙

2019.06.1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27조에 따라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신규채용

제2조(채용공고)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부(과)장은 매학기 학장이 지정한 기일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교과목 및 지원자격, 면접심사 시행 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공고한다.

제3조(신규채용후보자 심사)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부(과)에서 실시하되, 학부(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사 임용 심사업무 처리지침(이하 “강사임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서류심사

- 가.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
- 나. 교육경력 및 교육(강의)계획서
- 다. 총괄연구업적
- 라. 자기소개서

2. 면접심사

가. 공개 발표 및 교육 계획

나. 임용적합성

제4조(심사위원) 학장은 해당 전공(교과)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 중 3명을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과)장이 된다. 각 단계별 심사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에서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심사방법) 신규채용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사임용지침에 따른다.

제6조(특별채용) 학부(과)장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공고 및 접수, 면접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강사임용지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며, 제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학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채용후보자의 추천) ① 학부(과)장은 면접심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 점수 35점 이상 또는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채용후보자를 학장에게 추천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학부(과)장이 제출한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③ 학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이 된 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④ 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른다.

제2장 재임용

제8조(재임용 기회제공 및 절차) 강사에 대한 재임용 기회제공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18조에 따른다.

제9조(재임용 심사) ①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해당 강사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19조에 따라 관련 학부(과)에서 실시한다.

② 동조 제1항 각 호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의 항목·비중·방법 등은 강사임용지침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10조(재임용예정자 결정 등) ① 학부(과)장은 강사의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재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부(과)장은 해당 강사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등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장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학부(과)장이 제출한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④ 학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이 된 재임용예정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31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